

9.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중 개정령(안)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1997-432호 1997. 12. 6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대상을 확대하여 당해 지구 거주자, 다른지구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되는 지구내 거주자의 거주기간을 3월로 정하고, 공급받은 주택의 전매·전대금지 기간을 당해 주택 입주후 6월까지로 정하며,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이 지구내 주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순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전화 500-4122, 주

택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주택회보